

약자에게 강했던 허물을 벗어버리다.

“강자에게 약하지 말고 약자에게 강하지 말자”

공직생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며 꼭 지키고 싶은 문구였다. 하지만 실천하기의 어려움은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 관계, 주변 상황을 모두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지도 어언 8년 차, 공직생활이라는 바다에서 그 결심의 배는 비교적 순조롭게 항해하는 듯 보였다. 부동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서, 지방세수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담당하는 것만으로도 심정적으로 부담이었지만,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법이 개정되는 격변기에 마주하는 민원인과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대치(對峙)는 그 긴장감을 최고조로 이끌었다. 급기야 거센 풍파가 내 잔잔했던 항해의 경로를 방해하려 하였다.

2020년이 끝날 무렵 취득세 신고창구에서 고성이가 울렸다. 종종 있었던 일이라 곧 잠잠해지겠지 하며 대수롭게는 여기지 않았다. 발급을 담당하시는 주임님이 황급히 나에게 찾아와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아버지(신고인)의 부동산을 아들(취득자)이 취득하려는 것이었는데 서류가 부족한 것이었다. 법에서 가족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매매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과세관청에서 소득금액증명용으로 제출받는 서류는 국세청 소득자료인데 그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고지서 발급을 무리하게 요청하고 있던 것이다. 나는 창구 쪽으로 다가가 신고인에게 규정을 설명하려 하였지만 그럴 틈은 허용되지 않았다.

“당신이 판사야? 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야!”

사무실의 전 직원이 들을 만큼 고태치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에 난 순간 몸이

굳어져 버렸다. 팀장님도 나오셔서 민원인을 상담테이블로 안내 후 차분하게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으나 신고인은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엄포를 내놓으며 서류를 탁상 위에 크게 내리쳤다. 다른 민원도 밀려오는 상황에서 계속 이 건에 대해 매달릴 수도 없었던 차였으나 그렇다고 규정을 어겨 고지서를 발급하는 건 더더욱 안 되는 일이었다. 관련된 규정을 출력하여 제시해 주고 나서야 씩씩거리며 관청을 뒤로한 채 신고인인 취득자의 아버지는 떠났다. 그렇게 그 일은 끝난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주가 지났다. 점심을 먹고 막 사무실로 올라오던 차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 신고인이었는데 이번에는 당시 미비했던 서류를 보완해서 재차 방문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매매가 아닌 증여로밖에 볼 수 없는 사안이었다. 소득증명에 대한 중요서류가 여전히 없기 때문이었다. 완전히 서류를 갖추면 취득신고를 받겠다는 말을 건넸지만, 신고인은 몇 달 뒤에 꼭 제출하겠다고며 취득세 고지서가 급하니 얼른 발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난 깊은 고민에 빠져서 결정을 쉽사리 할 수 없었다. 공무원으로서 법에 따른 업무처리와 민원발생 방지의 이중고(二重苦)에서 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그때도 그 난리를 쳤는데, 또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소리를 칠 것이 분명하고, 더군다나 두 번씩이나 방문했는데 신고를 거부하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 괜히 큰소리가 나면 내가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직원으로 창피당할 수 있으니 일단 처리하고 서류는 몇 달 뒤에 받으면 그만이지”

몇 달 뒤에 중요서류를 보완 받겠다는 구두약정과 함께 고지서를 발급하고야 말았다. 신고인의 언행을 보았을 때 서류를 제대로 보완할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더 큰 민원으로 번지기 전에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한 것이 최선이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다. 혹여 서류를 추후에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원 같은 조사기관의 눈만 피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라는 안일함이 점점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렇게 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본분을 잊고 정도(正道)가 아닌 사도(邪道)의 길로 택한 것이다.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고 평소처럼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에 걸

리는 것이 있었다. 며칠 전 고지서 발급 건이었다. 분명 증여거래로 심증은 가는데 신고인의 강한 언행으로 담당자인 내가 움츠러들어 고지서를 발급했다는 자책감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다. 잠깐의 생각이겠지 하며 곧 잊힐 거라 여기고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그날의 기억들이 남아있었다. 과연 정반대의 민원인이었다면 세무공무원으로서 나의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을 텐데, 괜히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오명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업무를 처리한 게 아닌가 하는 물음표가 계속 나의 양심을 시험했다. 결정적으로 세금을 내러 몇 시간을 관청까지 달려와 주신 어르신의 말씀이 바로 내 양심의 경종을 울리고야 말았다.

“나는 세금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TV를 보면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 꼭 주무관님이 세금 내게 해주세요. 주무관님 믿고 이 세금 낼게요”

무언가 가슴에 뜨겁게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세무공무원이 되고자 했던 이유, 지금도 앞으로도 변치 않는 세무담당자로서의 나를 다짐했던 순간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고 그 취득 신고 건에 대해 다시 면밀한 조사를 시작하고자 결심했다. 그리고 곁에서 이끌어주신 팀장님의 격려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탱해준 큰 원천이 되었다. 난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세무공무원으로서 적정하게 과세하고 조세정의를 지키고자 함은 잘못된 것이 없다.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니,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면 된다.”

무작정 매매거래를 증여라고 단정 지을 순 없었지만 최근 개정된 다주택자에 관한 법령을 다각도로 검증하였다. 유관기관의 법 자문과 의견은 물론이고 관련된 판례, 해석, 지침 등을 빠짐없이 확인한 결과 이 사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됨이 밝혀진 것이다. 최초로 신고·납부한 것은 과소신고·납부로서 누락세액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제 누락세금을 추징해야 할 일만 남았다.

시간을 지체할 것도 없이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하지만 신고인과 세무대리인은 통지서를 받자마자 격분하여 나를 찾아와 당장 철회하라고 협박을 하였다. 만일 과세관청이 패한다면 담당자인 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까지 하겠다며 위협을 가한 것이다. 거기다 위원회까지 가면 서로 피곤하니 여기서 조용히 끝내자고 회유까지 한 것이다. 순간 마음이 불편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괜히 여기서 더 나아갔다가 “공직생활의 흠결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강한 압박감이 생겼다. 하지만 법과 규정이라는 조세정의,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양심을 믿고 흔들린 마음을 다잡고 의지를 멈추지 않았다. 1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내가 뜻을 굽히지 않자 신고인 측은 관청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일주일 후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팀장님으로부터 감사과에서 나의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접한 것이다. 순간 일주일 전 나의 결정이 신고인 측의 뜻대로 되지 않자 관청을 빠져나가며 세무대리인이 신고인에게 작은 소리로 건넸던 말이 떠올랐다. “걱정 마세요. 감사원과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별수 있겠어요?” 난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말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의 당혹감을 잊을 수가 없다. 감사과에서 전달된 내용을 들어보니 내가 신고인 측에 전달한 과세예고통지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 검토를 하여도 그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팀장님과 주위의 동료들도 이 사안은 문제소지가 없음을 확신하였다. 팀장님께서 법에 맞는 처리절차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달래주셨지만 처음 겪는 이 상황에 한동안 말을 잃고 모니터만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들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분명 나를 압박하여 이 사안을 위원회에 전달되기 전에 철회하려는 심산이 분명한 것이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나 자체로서의 양심을 지키고자 도와주셨던 동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난 철저히 문제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상대 측에 유선으로 안내함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불복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신고인 측도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는지, 급기야 불복을 제기하였고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서로 간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상대편 측은 세무대리인, 우리 측은 담당자인 내가 참석하여 서로의 의견을 개진했다. 발언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긴장이 풀렸는지 걸어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결과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살면서 수없이 들었지만, 이 사안은 꼭 결

과까지 가져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손해배상”이라는 두려움이 아닌 “공정과세”를 하겠다는 나의 다짐을 위해...

그리고 약 일주일 후 위원회를 개최한 기관에서 결과가 통보되었다. 이 문서를 열어보기 전 긴장감과 떨림은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수년 만에 느껴보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다. “합격”을 바랐던 지난날의 기억처럼 “관청의 승소”라는 또 다른 합격을 난 6개월 전부터 빌고 또 빌어오고 있었다. 문서를 열자마자 난 나지막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다 끝났다.” 상대 측과의 다툼도, 세금을 내러 멀리까지 오신 어르신과의 약속도, 끝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도... 난 소리 없는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신고인의 의견 불채택”

요즘 자주 그런 생각을 해본다. ‘세무공무원으로서 내가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의라는 것은 검찰, 경찰,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떠올려지는 그런 단어라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완전하진 않지만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은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따스해진다. 맡은 직무에서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과세행정에 공정함을 더한다면 선량하게 납세의무를 지키는 자들에 대해 공직자로서 공평과세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잠시 눈을 감고 지나온 흔적들을 떠올렸다. 평소 민원인이 큰소리를 내면 심정적으로 두렵고 괜한 민원이 발생하면 인사상에 문제가 생길까 고민돼 당당하게 응대하지 못한 것,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익숙해져 힘이 없고 세법에 대해 잘 모르는 납세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고 법령에 맞으니 내라는 강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큰소리를 내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 앞에선 조용히 처리하면 되겠지 하는 소극적인 모습의 나를 말이다.

납세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제가 낸 세금 잘 쓰이나요?’, ‘저만 이렇게 세금 내는 거 아니죠?’, ‘세금은 돈 있는 사람한테는 안 거두고, 없는 사람한테만 거두나 봐요?’ 그런 물음표에 형식적인 답변으로 순간순간을 넘어갔던 안일함은 이제 느낌표로 다시 채워야 할 것이다. 또한,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허물은 이제 서서히 그 자취를 잃어갈 것이다. 공직에 첫 발걸음을 떼었던 나와 함께하고자 했던 그 문구가, 흐릿함에서 다시 선명한 빛을 띠며 가슴 벅찬 향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